

서울중앙지방법원 2019. 5. 17 선고 2018가단65171 판결 [구상금 청구의 소]

전 문

원 고 A 연합회

소송대리인 B

피 고 C

변론 종결 2019. 4. 26

판결 선고 2019. 5. 17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 36,65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7. 2. 26.부터 1997. 7. 8.까지는연 5%의, 그 다음날부터 2003. 5. 31.까지는 연 25%의,그 다음날부터 2015. 9. 30.까지는 연 20%의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인정사실

가. 원고는 D 택시(이하 '원고 차량'이라고 한다)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 사업자이다.

나. 피고는 1996. 4. 7. 01:55경 E 차량(이하 '피고 차량'이라고 한다)을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F에 있는 편도 4차선 도로의 1차로를 성동구청소 방면에서 가락동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차로를 주행하던 소외 G이 운전하던 원고 차량을 충격하였고(이하 '이 사건 사고'라고 한다), 이로 인하여 원고 차량에 탑승하고있던 소외 H와 소외 I가 상해를 입었다.

다.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는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금으로 36,650,000원을 지급하였다.

라. 이후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97가단281718호로 구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, 위 법원은 1998. 9. 2. "피고는 원고에게 36,650,000원 및 이에 대한 1997. 2. 26.부터 1997. 7. 8.까지 연 5분의,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한 5분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."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,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.

마. 그 후 원고는 위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다시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단301908호로 구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, 위 법원은 2008. 11. 28. "피고는 원고에게 36,65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7. 2. 26.부터 1997. 7. 8.까지는 연 5%, 그 다음날부터 2003. 5. 31.까지는 연 25%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"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, 위 판결을 그대로 확정되었다(이하 '이 사건 확정판결'이라고 한다).

바. 원고는 2018. 11. 21. 이 사건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또 다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.

[인정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내지 4호증의 각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판단

이 사건 소는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,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36,65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7. 2. 26.부터 1997. 7. 8.까지는 연 5%의, 그 다음날부터 2003. 5. 31.까지는 연 25%의, 그 다음날부터 2015. 9. 30.까지는 연 20%의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%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.

이에 대하여 피고는,이 사건 사고 직후 피해자들에게 합의금을 지급하였으므로,피고가 피해자들에게 지급한 합의금 합계 16,500,000원은 원고의 청구금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,피고의 위 주장은 이 사건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반하는 주장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(대법원 2018. 7. 19. 선고 2018다22088 전원합의체 판결, 대법원 2014. 3. 27. 선고 2011다49981 판결 등 참조).

3. 결론

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.

판사 이영은